



제1550호
2020년 7월 24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4 7 8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4 7 9 호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
○ 공	고 제 1 4 9 8 호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7
○ 공	고 제 1 5 0 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16
○ 공	고 제 1 5 0 2 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열람	25
○ 공	고 제 1 5 0 3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열람	27
○ 공	고 제 1 5 0 4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0
○ 공	고 제 1 5 0 7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4
○ 공	고 제 1 5 0 9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2
○ 보 건 소 공 고 제 6 7 호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모집 공고	70
○ 보 건 소 공 고 제 6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76

고 시

○ 고	시 제 1 2 2 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77
-----	-------------	----------------------	----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478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상당 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2020. 7. 17.(금) ~ 2020. 8. 6.(목) (21일^ㄴㄴ^ㄴ간)
4. 직권말소 예정일: 2020. 8. 7.(금)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연번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3-19)	놀이터보드PC	조 * 찬	인천 남동구 용천로17번길 55, 1층 (구월동)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 이행	직권말소
2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7-39)	나이스 PC	조 * 순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7-19, 1층 (구월동)		
3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08-56)	BOSS PC	정 * 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32, 2층 (구월동)		
4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7-37)	체리 PC	길 * 늘	인천 남동구 평온로6번길 26, 1층 1호 (간석동)		
5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07-56)	엑스피아 PC방	이 * 훈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20, 2층 (구월동)		

6.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2020. 8. 6.(목) 18:00까지
- 문의사항: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통팀 (☎032-453-6263)

2020년 7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479호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7. 17.(금) ~ 2020. 08. 06.(목) (20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0. 08. 07.(금)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연번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노래연습장업 (2008-22)	신나 노래연습장	정 * 실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26, 지층 (구월동)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 2020. 08. 06.(목) 18:00까지
- 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통팀 (☎ 032-453-6262)

2020년 07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사항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498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연간 600,000원 이내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제외대상 :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 4,749,664원 이상인 세대 등
세대주(세대원)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항목 : 지원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2020년도분)을 신청시 첨부 제출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 통보
6. 신청접수 등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8. 7.
 - * 지급 예정 : 2020. 7월 이후
 - 접수 및 문의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그린벨트팀), Tel 453-2970, Fax 453-2959
 - 신청시 제출서류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별지 제1호의2]
 -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별지 제1호의3]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⁸⁾ [] 기타 ⁹⁾)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u>차상위 자산형성</u> [] 타법 의료급여 ¹⁰⁾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척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u>차상위 자산형성</u>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경감, <u>차상위 자산형성</u>)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임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마리, 원)		원	
		□ 기타가축(마리, 원)		원	
		□ 종묘(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계·기구류(원)	조합원 입주권	원		
	□ 기타(원)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 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7.21. ~ 2020.8.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2저4719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0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 명	량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107	22저4719	NEW EF쏘나타C VT	최*영 /75****	경기도 부천시 성*****길 2*-*, **2호(고*동, 상**라)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4.22.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부천소사경찰서	2011.04.12	경비교통과2281	교통법규위반과태료체납(고지번호:13237010032810)
						압류	부천시 차량관리과	2013.02.28	차량관리과 11398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007779)
						저당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11-2010-015267	2010.09.14	5,000,000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교통민 원과	2013.03.08	교통민원과-11935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2-000304)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3.03.12	주차지도과-4192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0-002221)
						압류	부천시 소사구	2013.07.11	소사구세무과-0711	지방세 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11.28	세무과-10021	지방세 체납
						압류	부천소사경찰서	2014.05.12	2014D132300371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2370140011351)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4.08.07	교통행정과-1693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5-004290)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4.10.21	주차사업팀-2535	공영주차장요금체납(2014-716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교통민원과	2015.01.07	교통민원과-00604	주정차위반과태료(2014-11-000141)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5.02.24	교통행정과-4089	주정차위반과태료(2014-11-003943)
						압류	부천시청	2015.04.30	차량등록과-4926	의무보험미가입(039823-00)
						압류	부천시청	2015.04.30	차량등록과-4926	의무보험미가입(039824-00)
						압류	부천시청	2015.07.31	차량등록과-20859	검사지연(001813-00)(대체 :22저4719)
						압류	인천 중구청교통행정과	2016.05.13	교통행정과-10976	주정차위반과태료-경기37가6988(1997-08-000428)
						압류	부천시청	2016.10.11	차량등록과-1779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무보험(022224-00) 22저4719)
						압류	부천시청	2016.10.11	차량등록과-1779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무보험(022225-00) 22저4719)
2020-00138	01두6760	쏘렌토 GLS	류*길 /6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길 2*, 5**호(십*동)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5.20.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 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2016.12.02	보험급여부-905371	건강부당이득금(2746510)

						압류	충청남도 천안시 경제산업실 환경위생과	2018.01.04	환경위생과-50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2018.02.08	세정과-2539	지방세 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2018.02.23	보험급여부-901798	건강부담이득금(20633190)	
						압류	경주경찰서	2018.06.12	2018D190500955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0570180106117)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경제산업국 환경과	2018.07.12	환경과-17829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2018.08.07	세정과-180807	지방세 체납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일자리경제국 환경과	2018.12.19	환경과-7387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01두6760)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2019.02.11	세정과-190211	지방세 체납	
						저당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저당물부번호 : 4429-2016-001721	2016.04.14	3,050,000		
						압류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02.27	차량등록사업소-34 88	과태료 체납(20181203002673)	
						압류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02.28	차량등록사업소-70 66	과태료 체납에 의한 체납처분(20181203013786)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일자리경제국 환경과	2019.07.02	환경과-19446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2019.08.01	징수과-190801	지방세 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2019.09.03	자격징수부-908395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일자리경제국 환경과	2019.12.24	환경과-38981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12.31	차량등록사업소-44 436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 등록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2020.02.05	징수과-200205	지방세 체납	
2020-00140	42주6918	원스톱2.0 SC디젤2WD AT 5인승	이*희 /65****	충청남도 아산시 탕*면 탕**로 2**-**,**1호(하*빌)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5.21.	구분	채권자/추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 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2015.08.05	징수과-0804111	지방세 체납(041-540-2298,536-8469)	
						저당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저당물부번호 : 4516-2015-001559	2015.04.28	6,300,000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8.10	차량등록사업소-21 327	대체 ~90우6831 ~ 부과번호 ~01336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8.10	차량등록사업소-21 327	대체 ~90우6831 ~ 부과번호 ~01336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8.10	차량등록사업소-21 327	대체 ~90우6831 ~ 부과번호 ~00952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8.10	차량등록사업소-21 327	대체 ~90우6831 ~ 부과번호 ~01182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5.08.10	차량등록사업소-21 327	대체 ~90우6831 ~ 부과번호 ~01182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 지청	2015.10.22	고용관리과-1431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아산시 교통행정과	2015.11.10	교통행정과-59311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914013206)	
					압류	아산시 교통행정과	2015.11.10	교통행정과-59311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914013207)	
					압류	안성시청	2016.01.15	교통정책과-710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201501009210)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6.02.21	환경보전과-345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안성시청	2016.03.18	교통정책과-13968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201501012430)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6.09.05	환경보전과-1936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2016.09.23	징수팀-905473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4009280 연금:0고용:0산재:0)	
					압류	안성시청	2016.12.29	교통정책과-78707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201601006238)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7.02.07	환경보전과-306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아산경찰서	2017.02.16	2017D160800260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60870160813212)	
					압류	광주광역시 남구	2017.07.12	세무과-170712	지방세 체납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7.07.20	환경보전과-147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시흥시환경정책과(031-310-5976)	2017.08.17	환경정책과-21291	환경개선부담금대체(87서7388-20111)	
					압류	시흥시환경정책과(031-310-5976)	2017.08.17	환경정책과-21291	환경개선부담금대체(87서7388-20112)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2017.10.24	급여관리팀-901048호	건강부당이득금(386830)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7.12.13	교통행정과-27467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70918014749)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7.12.13	교통행정과-27467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70918014750)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7.12.20	환경보전과-2714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환경국 환경생태과	2018.01.03	환경생태과-32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일괄 대체압류(87서7388)	
					압류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환경국 환경생태과	2018.01.03	환경생태과-32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일괄 대체압류(광주85나2580)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02.02	교통행정과-5955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71120017783)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02.02	교통행정과-5955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71120017784)	
					압류	아산시청 민원봉사담당관실	2018.05.14	민원봉사담당관-14395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80315001025)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8.06.04	환경보전과-1253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2-09-000252)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2-10-004047)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4-10-006363)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4-10-000626)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4-04-001818)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4-02-001815)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8.08.27	.-229887	주정차위반과태료-90우6831(2013-12-001860)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10.10	교통행정과-53279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80723011425)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10.10	교통행정과-53279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80723011426)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10.10	교통행정과-53279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80723011423)	
					압류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2018.10.10	교통행정과-53279	의무보험과태료 체납(20180723011424)	
					압류	광주광역시남구청세무과	2018.12.05	세무세외-181205	세외수입체납에 따른일괄압류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2019.02.28	환경보전과-352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2019.09.02	환경보전과-1725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2019.12.24	환경보전과-2626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구분	채권자/추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 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저당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 *저당글부번호 : 2824-2006-004073	2006.06.22	10,000,00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 동지사장 ☎032-452-7234	2007.07.3 0	부과징수부-815	체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국민연금공단인천지사장 ☎032-451-0832	2007.09.2 1	인천 고객지원팀-57 54	체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인천시남동구청☎032-4 53-2606	2007.12.2 0	환경과-31130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2007-02-1-28200101-000935)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7368,7367,4511	2008.04.2 5	교통91000-15647	주정차위반[2008-01-102524] (대체:10모754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032-880-4511,7637, 7368	2008.05.2 3	교통91000-18627	주정차위반[2008-02-103202]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032-880-4511,7637, 7368	2008.05.2 3	교통91000-18627	주정차위반[2008-02-10359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032-880-4511,7637, 7368	2008.05.2 3	교통91000-18627	주정차위반[2008-02-10394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0168]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021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0365]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0723]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1103]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161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174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176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6.1 7	교통91000-22125	주정차위반[2008-03-10318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16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562]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78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98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1187]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1587]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238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314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3542]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200065]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16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562]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78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098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1187]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1587]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238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314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7.1 6	교통91000-26199	주정차위반[2008-04-103542]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 ☎032)560-5940	2008.08.2 0	교통행정과-11906	주정차위반[2008-03-102852]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 ☎032)560-5940	2008.08.2 0	교통행정과-11906	주정차위반[2008-03-103926]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 ☎032)560-5940	2008.08.2 0	교통행정과-11906	주정차위반[2008-04-105045]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7368,7367,4511	2008.08.2 2	교통91000-30807	주정차위반[2008-05-100174]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	2008.11.1 3	교통과-38253	의무보험미가입체납(025596-00)	
						압류	인천남동구청차량관리팀	2008.11.1 3	교통과-38253	의무보험미가입체납(025597-00)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9.02.0 9	환경과-3452	2008년도2기분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032-880-4511,7368, 7367	2009.05.2 0	교통91000-19916	주정차위반[2009-02-200148]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09.06.1 7	교통63310-090616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200872305057185)	
						압류	인천시 남동구청	2009.07.0 9	환경과-16308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032-453-2932)	2009.08.1 5	자동차과-30132/09 000245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체납	
						압류	안산시상록구청	2009.10.0 9	건설교통과-26879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3-2009-019687)	

					압류	인천남동구청	2010.01.08	환경과-156	환경개선부담금채납(2009-02-1-28200101-000826)	
					압류	인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0.01.25	교통행정과-1065	주정차위반과태료채납(2009-10-000501)	
					압류	인천남동구청	2010.06.22	환경과-14860	환경개선부담금채납(2010-01-1-28200101-000767)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06.23	경비교통과-005926	도로교통법위반(200972305062265)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11.18	경비교통과-011129	과태료 채납(고지번호:230570100131993)(대체 :)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2011.01.11	환경과-77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민원과	2011.05.11	교통민원과-19723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1-000875)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1.05.18	교통행정과-8712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2-00112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민원과	2011.07.06	교통민원과-29428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3-00081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1.07.18	환경보전과-1944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1.09.07	경비교통과-5840	과태료채납(230570110072661)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1.09.07	경비교통과-5840	과태료채납(230570110075296)	
					압류	인천 남동경찰서	2011.09.26	경비교통과-6575	과태료 채납(23057011005995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민원과	2011.11.07	교통민원과-50970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7-00185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2.01.11	환경보전과-952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서울 중구	2012.01.13	교통지도과-1001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9-10131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02.07	교통행정과-2486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1-00271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민원과	2012.03.08	교통민원과-11365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2-00120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2.07.09	환경보전과-18462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 남동구청	2012.09.12	세무과-23675	지방세 채납 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10.12	교통행정과-20103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7-000134)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2.11.07	주차지도과-18787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6-000997)	
					압류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2.11.26	차량민원과-3508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7-0022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환경보전과	2013.01.10	환경보전과-875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교통민원과	2013.03.27	교통민원과-5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3-00232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교통민원과	2013.03.27	교통민원과-5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3-003173)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생활국 교통민원과	2013.03.27	교통민원과-5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3-00424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3.06.10	환경보전과-14855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 행정과	2013.09.1 3	교통행정과-5775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6-00462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01.1 3	환경보전과-115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06.1 3	환경보전과-1829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12.1 9	환경보전과-4214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5.12.1 7	환경보전과-4026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서울 중구	2016.01.1 1	주차관리과-961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9-10251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6.04.2 6	자동차관리과-2269 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5815-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6.04.2 6	자동차관리과-2269 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5816-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구청교통민원과	2016.06.0 7	교통민원과-30435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3-000689)	
					압류	서울 중구	2016.06.0 9	주차관리과-17611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2-10086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6.06.1 4	환경보전과-1565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6.06.3 0	환경보전과-1796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10모754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6.12.2 0	환경보전과-3595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2017.04.1 4	차량민원과-7686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1-004207)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7.04.2 5	자동차관리과-2840 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2891-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7.04.2 5	자동차관리과-2840 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2892-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7.06.1 2	환경보전과-1432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2017.06.1 3	차량민원과-17332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3-001867)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7.12.1 2	환경보전과-3174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8.06.1 4	환경보전과-1383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8.12.0 7	환경보전과-2884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미추홀구청자동차관 리과	2019.04.0 5	자동차관리과-2004 5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001731)	
					압류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2019.04.0 9	교통행정과-8780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1-000427)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9.06.1 4	2019D230500952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90238707)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9.06.2 0	환경보전과-1324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9.12.1 7	환경보전과-2861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9.12.3 0	2019D230502208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91418858)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20.01.1 6	2020D230500074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91496439)	

제1550호

남동구 구보

2020. 7. 24. 목요일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09.2 6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	--	--	--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작성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체육진흥과(☎453-6282),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칭: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대지면적=102,117.3㎡, 연면적=12,798.24㎡
- 변경: 대지면적=102,117.3㎡, 연면적=13,373.1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1.0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체육진흥과 032-453-6282, 도시재생과 032-453-2955)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3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작성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본부 건축1팀(☎440-5260), 남동구청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칭: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A=169,851m²
- 변경: A=170,025.9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청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6.08.22. ~ 2020.0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종합건설본부(건축1팀 032-440-5260)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편입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합	계			170,026	170,026	-	-	-	-
1	남촌동	652	대	139,746	139,746	인천광역시			
2	남촌동	652-1	공	4,151	4,151	인천광역시			
3	남촌동	652-2	도	1,714	1,714	인천광역시			
4	남촌동	652-3	공	3,241	3,241	인천광역시			
5	남촌동	652-4	도	1,720	1,720	인천광역시			
6	남촌동	652-5	공	1,936	1,936	인천광역시			
7	남촌동	652-6	공	13,879	13,879	인천광역시			
8	남촌동	652-7	도	322	322	인천광역시			
9	남촌동	652-8	대	152	152	인천광역시			
10	도림동	726-1	대	127	127	인천광역시			
11	도림동	726-2	공	1,412	1,412	인천광역시			
12	도림동	726-3	도	660	660	인천광역시			
13	도림동	727	대	639	639	인천광역시			
14	도림동	727-1	공	169	169	인천광역시			
15	도림동	727-2	공	158	158	인천광역시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4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동의서 서식 신설 (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추가)
- 소송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명확히 함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구 및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안 제3조제1항)
- 고문변호사 위촉 등 현황 공개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공개동의서 서식 신설 (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추가)
- 소송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명확히 함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구 및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안 제3조제1항)
- 고문변호사 위촉 등 현황 공개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발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를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을 “구 및 구청장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를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별표에”를 각각 “별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인락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에”를 “별표를”로 한다.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남

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제2조제3항 관련)

승 낙 서

변 호 사 ○ ○ ○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

나는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남동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본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로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규정함</u> ----- ---
제2조(위촉) ① · ② (생략)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승낙서 및 청렴서약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위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승낙서, 청렴서약서</u> 및 <u>정보공개동의서</u> -----.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생략) 2. <u>구</u>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3조(직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u>구 및 구청장</u> 을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3회에 한정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임기) ① ----- ----- <u>세 차례만</u>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u>구청장이</u>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u>대해서는</u>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u>구청장은</u> ----- ----- <u>대하여</u>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

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단,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소송사건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 80%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

-----.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① -

----- 별표를 -----.

-----.

② -----

----- 별표를 -----

-----.

③ -----

----- 별

위-----

-----.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

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

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

의 1%를 지급한다.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 화해 및
조정으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④ ~ ⑥ (생 략)

⑦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
른다.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
원)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
준은 별표와 같다.

④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
장은 소송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
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

2. ----- 인락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별표를 ---
--.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남동구 조례·규칙심
의회 운영 규칙」-----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필요-----
-----.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

	<u>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
--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발췌)

- (공개내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공개하여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통제 유도
 - 관련 규정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기준·절차·위촉계획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 기간 등
 - 소송대리 현황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 ※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계약체결시 사전에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
- (공개장소)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소송현황 정보를 열람·검색이 용이하도록 공개
 - 소송현황 관련 메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 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일원적으로 공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7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에 따른 감면 규정과 인용법률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2020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3조)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8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세무과 /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에 따른 감면규정과 인용법률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 2020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 정비(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3조)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8조)
- 감면 제외대상의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78조의3, 제75조의2, 제177조, 제1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감면율”은 100분의 100”을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에”를 “를”로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에”를 “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 포함한다)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공제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
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
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
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
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생략)

 2022년 12
월 31일-----.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경감
률”은 100분의 50-----.

<삭 제>

제9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동산등-----.

제1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

음)

② -----

-----를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

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

-----.

② -----

----- 별지

제2호서식-----

-----.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

-----을-----.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 ⑧ (생략)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 ⑮ (생략)

[본조신설 2020. 1. 15.]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

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9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 수정신고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제49조
 -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세무과 /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규칙안: 별첨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법률 제14474호, 2016.12.27., 전부개정시 조문 변경)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제49조
 - 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제50조
- (안 제9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략)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 ----- -----.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략)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 ----- -----.

[참고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67호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모집 공고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한 「2020년 식품접객업소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영업주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 지원내용 :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시설 및 물품구입 자금 지원

시설 설치	물품구입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컨 등) • 손님이 주방내부를 볼 있도록 CCTV설치 • 고객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계산대 투명칸막이 등 설치 • 업소 청결 및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방역 용역비용 •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 설치(추가설치에 한함)	• 음식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개인접시·국자·집게 등 구입 • 업소 위생관리 용품(자외선 칼 소독기, 항균도마, 위생복 등)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상시화를 위한 포장용기구입

※ 손소독제, 기구용기소독제 구입은 자금지원 항목에서 제외

-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모집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25개 업소 ▶ 업소당 20만원 이내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 업소 자부담 20%,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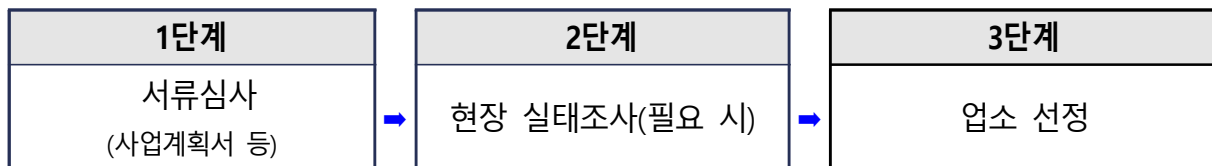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지방세 체납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 타 유사사업(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 등)에 지원받은 영업소

2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1.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계획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견적서, 현장사진(시설 개선 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원 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수서류 중 미제출 자료 있을 시 선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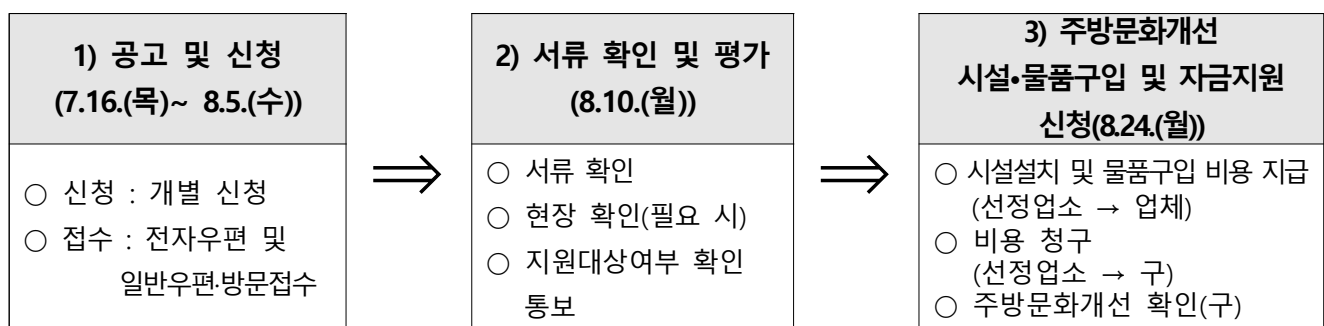
3 선정방법

○ 선정단계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순으로 선정 (선착순)

4 추진일정



4) 개선비용 지급(9월)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비용 지급
(구 → 선정업소)

5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0. 7. 16.(목) ~ 2020. 8. 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kmc0922@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보건소),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확인 통보 : 2020. 8. 10.(월) 예정
 -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1.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계획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 증빙) (발급처 : 민원24(온라인 발급),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등)	
5.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 발급용으로 제출	
6. 견적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시)	
7. 현장사진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은 음식점 영업주가 직접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

업소명:

신청자 서명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2020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2020년 남동구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 이용범위 : 지원 사업 및 남동구(지자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한정
-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사업 종료 기간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중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6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08.0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07.17. ~ 2020. 07.3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휴게음식점	2015-0199794	29번길	주*희	만수서로29번길 38, 1층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7.18	2020.08.03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07.3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0년 07월 1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고시제2020-12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20.07.22.)에서 의결, 확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69,616,564	100.00%	933,431,647	100.00%	36,184,917	3.88%
일반회계		938,567,013	96.80%	902,486,521	96.68%	36,080,492	4.00%
특별회계		31,049,551	3.20%	30,945,126	3.32%	104,425	0.34%
	기타특별회계	31,049,551	3.20%	30,945,126	3.32%	104,425	0.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844,799	1.12%	10,844,799	1.16%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200	0.00%	18,200	0.00%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15,874	0.15%	1,328,949	0.14%	86,925	6.5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90,000	0.03%	290,000	0.03%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8,480,678	1.91%	18,463,178	1.98%	17,500	0.09%

세 입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38,567,013	100.00 %	902,486,521	100.00%	36,080,492	4.00%
100 지방세수입	134,407,000	14.32 %	131,907,000	14.62 %	2,500,000	1.90%
110 지방세	134,407,000	14.32 %	131,907,000	14.62 %	2,500,000	1.90%
200 세외수입	49,651,272	5.29 %	50,045,121	5.55 %	△393,849	△0.79%
210 경상적세외수입	40,569,815	4.32 %	41,244,939	4.57 %	△675,124	△1.64%
220 임시적세외수입	9,081,457	0.97 %	8,800,182	0.98 %	281,275	3.20%
300 지방교부세	17,406,000	1.85 %	15,610,000	1.73 %	1,796,000	11.51%
310 지방교부세	17,406,000	1.85 %	15,610,000	1.73 %	1,796,000	11.51%
400 조정교부금등	95,102,006	10.13 %	89,820,860	9.95 %	5,281,146	5.88%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95,102,006	10.13 %	89,820,860	9.95 %	5,281,146	5.88%
500 보조금	569,153,243	60.64 %	542,256,048	60.08 %	26,897,195	4.96%
510 국고보조금등	418,879,774	44.63 %	399,244,284	44.24 %	19,635,490	4.92%
520 시·도비보조금등	150,273,469	16.01 %	143,011,764	15.85 %	7,261,705	5.0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847,492	7.76 %	72,847,492	8.07 %	0	0.00%
710 보전수입등	72,847,492	7.76 %	72,847,492	8.07 %	0	0.00%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38,567,013	100.00%	902,486,521	100.00%	36,080,492	4.00 %
010 일반공공행정	50,301,304	5.36 %	51,099,316	5.66 %	△798,012	△1.56 %
020 공공질서및안전	11,280,854	1.20 %	11,244,664	1.25 %	36,190	0.32 %
050 교육	15,511,466	1.65 %	14,205,586	1.57 %	1,305,880	9.19 %
060 문화및관광	19,220,144	2.05 %	18,131,005	2.01 %	1,089,139	6.01 %
070 환경	39,797,763	4.24 %	36,861,415	4.08 %	2,936,348	7.97 %
080 사회복지	604,541,774	64.41 %	580,843,807	64.36 %	23,697,967	4.08 %
090 보건	22,640,966	2.41 %	21,649,304	2.40 %	991,662	4.58 %
100 농림해양수산	4,174,591	0.44 %	3,728,350	0.41 %	446,241	11.97 %
110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4,014,884	0.43 %	3,465,615	0.38 %	549,269	15.85 %
120 교통및물류	12,074,214	1.29 %	12,140,968	1.35 %	△66,754	△0.55 %
140 국토및지역개발	49,290,816	5.25 %	43,679,333	4.84 %	5,611,483	12.85 %
160 예비비	2,519,114	0.27 %	2,501,659	0.28 %	17,455	0.70 %
900 기타	103,199,123	11.00 %	102,935,499	11.41 %	263,624	0.26 %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38,567,013	100.00%	902,486,521	100.00 %	36,080,492	4.00%
100 인건비	90,327,395	9.62%	89,615,482	9.93 %	711,913	0.79%
200 물건비	37,194,329	3.96%	37,581,526	4.16 %	△387,197	△1.03%
300 경상이전	691,102,679	73.63%	679,639,867	75.31 %	11,462,812	1.69%
400 자본지출	101,643,485	10.83%	77,397,003	8.58 %	24,246,482	31.33%
700 내부거래	7,873,293	0.84%	7,888,293	0.87 %	△15,000	△0.19%
800 예비비및기타	10,425,832	1.11%	10,364,350	1.15 %	61,482	0.59%

세 입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049,551	100.00 %	30,945,126	100.00 %	104,425	0.34%
200 세외수입		7,453,100	24.00 %	7,453,100	24.08 %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3,460,100	11.14 %	3,460,100	11.18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993,000	12.86 %	3,993,000	12.90 %	0	0.00%
500 보조금		3,315,778	10.68 %	3,298,278	10.66 %	17,500	0.53%
510	국고보조금등	1,999,702	6.44 %	1,999,702	6.46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316,076	4.24 %	1,298,576	4.20 %	17,500	1.3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80,673	65.32 %	20,193,748	65.26 %	86,925	0.43%
710	보전수입등	20,258,402	65.25 %	20,156,477	65.14 %	101,925	0.51%
720	내부거래	22,271	0.07 %	37,271	0.12 %	△15,000	△40.25%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049,551	100.00 %	30,945,126	100.00 %	104,425	0.34 %
010 일반공공행정	155,225	0.50 %	53,300	0.17 %	101,925	191.23 %
070 환경	10,844,799	34.93 %	10,844,799	35.05 %	0	0.00 %
080 사회복지	1,030,550	3.32 %	1,030,550	3.33 %	0	0.00 %
120 교통및물류	17,629,890	56.78 %	17,612,390	56.91 %	17,500	0.1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08,200	0.99 %	308,200	1.00 %	0	0.00 %
900 기타	1,080,887	3.48 %	1,095,887	3.54 %	△15,000	△1.37 %

세 출 총 괄 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049,551	100.00%	30,945,126	100.00 %	104,425	0.34%
100 인건비	1,753,452	5.65%	1,768,452	5.71 %	△15,000	△0.85%
200 물건비	1,081,412	3.48%	1,070,272	3.46 %	11,140	1.04%
300 경상이전	3,725,969	12.00%	3,758,435	12.15 %	△32,466	△0.86%
400 자본지출	6,751,651	21.74%	4,678,133	15.12 %	2,073,518	44.32%
800 예비비및기타	17,737,067	57.13%	19,669,834	63.56 %	△1,932,767	△9.83%